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. 2. 20 선고 2018가단220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2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.
나. 2018. 8. 24.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 시까지 월 763,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주은영

별지